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07호 2017. 8. 23.(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7-104호 도로명주소 고시 3
-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7-925호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거창군 공고 제2017-932호 2017년 조경관리단 근로자 모집 공고 17

이 첨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8. 2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84 외 9건(부여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9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08-9	2009-07-02	2017-08-23	거창군 거창읍과 함양군 안의면을 연결하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3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1566-134	2009-12-28	2017-08-23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58-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84	2009-12-28	2017-08-23	1994년 거창읍시까지 간선도로명 결정에서 유래	
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86-1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개금길 391	2009-04-01	2017-08-23	금이 많이 나왔다하여 개금이라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411-1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187	2009-12-28	2017-08-23	서쪽 산수리 골짜기와 나란히 짝을 이루므로 붙여진 행정구역 병곡리를 반영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067-9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월포1길 141-513	2009-04-01	2017-08-23	수월천 소에 달이 비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50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지리재길 156	2009-12-28	2017-08-23	지리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21-3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진마루길 145	2009-04-01	2017-08-23	진마루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울리 191-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풍계2길 15	2009-04-01	2017-08-23	위천에서 내려오는 영천과 모동에서 내려오는 냇물경이 합류하여 하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10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408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1길 228-38	2009-04-01	2017-08-23	조선 중엽 이후 황토백산에서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거창군관리계획(시설:궤도,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궤도, 주차장, 도로)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4일

거창군수

- 가. 거창군관리계획(시설:궤도,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관계 도면 : 실음생략

【붙임】

거창군관리계획(시설: 궤도,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궤도

■ 궤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	궤도	고제면 개명리 2051-13번지	고제면 개명리 산19-12번지	고제면 개명리 산23-3번지	3,259	27,870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L = 3,259m B = 10m A = 27,870 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을 위해 익스트림 단지 구성에 따른 궤도 시설 신설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고제면 개명리 산19-14번지	-	7,801	7,801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A = 7,801 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을 위해 익스트림 단지 구성에 따른 주차장 신설

3)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2	571	22,305	-	-	-	2	571	22,305	
소로	2	571	22,305	-	-	-	2	571	22,305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286	9.5~11	국 지 도로	346	고제면 개명리 2026-1번지	고제면 개명리 2070번지	일 반 도로			
신설	소로	2	287	9.5~11	국 지 도로	225	고제면 개명리 산19-17번지	고제면 개명리 2040-1번지	일 반 도로			

■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2-286호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B = 9.5~11m L = 346m 	• 지역발전을 위해 익스트림 단지 구성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
-	소로2-287호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B = 9.5~11m L = 225m 	• 지역발전을 위해 익스트림 단지 구성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명칭 개정(안 제3조)
 -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개정

3.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4. 입법예고기간: 2017. 8. 17. ~ 2017. 9. 6.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민원봉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하는 곳 및 방법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우편번호:50132)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전화:055-940-3313, FAX: 055-940-3288, 이메일:fionara@korea.kr)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민원봉사실 토지정보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작성서식 1부. 끝.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일자	2017. 8. .
제 출 자	민원봉사실장

1. 제안 이유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부서명을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명칭 개정(안 제3조)

-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8. 17. ~ 2017. 9. 6.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후 반영

(6) 경남도내 타시군 조례 개정 현황

- 개정완료: 창원시, 통영시, 진주시, 거제시, 김해시, 남해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u>」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 ----- ----- ----- -----</p>	<p>상위 법령 체명개정</p>
<p>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u>민원봉사과장</u>, 도시건축과장 2. ~ 3. (생략) ④ (생략)</p>	<p>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u>민원봉사실장</u>, -----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부서장명 개정</p>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측량·지적 또는 수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3명
2. 외교부, 국방부 및 행정자치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 관리 또는 국어정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국사편찬위원회의 교육연구관 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명 이내

가. 5년 이상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다. 그 밖에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3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⑤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법인명):
- 주 소:
- 생년월일(단체·법인번호):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견	비고

2017년 조경관리단 근로자 모집 공고

거창군 관내 가로수, 공원 등 녹지공간 관리를 위한 2017년 조경관리단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거 창 군 수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업무내용
조경관리단	1명 (여1)	산 림 과 공원녹지담당	-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전정, 시비, 병해충 방제, 덩굴류 제거 등) - 공원 시설물 정비 및 녹지공간 환경정비 (제초, 풀베기 등) - 재해위험목 제거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2. 응시자격

-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육체적 근로 능력을 가진 여성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조경관련 기술자, 경력자 및 임업기계 운반 등 원활한 근로를 위한 차량소지자 우선선발
- 세대원 수 고려 저소득층 우선선발

3. 근로조건

- 근로기간 : 2017. 9월 ~ 2017. 11월(예산범위 내)
- 보수수준 : 1일 54,000원(기본급, 주휴수당 등)
 - ※ 실제 근무일수에 한하여 부대경비 5,000원 지급(교통, 간식비)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 동절기 및 하절기 근무시간 조정
- 후생복지 : 4대 보험가입
- 근무부서 : 산림과 공원녹지담당(근로지역 : 거창군 전역)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 08. 23.(월) ~ 08. 30.(수) / 3일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거창군청 산림과(공원녹지담당)
 - ※ 응시원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고시·공고」란 채용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음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직접 제출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첨부
 -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다.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예정)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약을 위해 대상자 예비 선정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시 선발 배제(예비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
 - 마. 주민등록 등본 1부(주소이력사항 기재,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 바.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1부

5. 채용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 채용방법 : 공고 후 응시자에 한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결격사유 조회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09. 01.(금), 개별통보

나. 제2차 시험 : 면접 및 실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 2017. 09. 4.(수) 예정,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09. 06.(수) 예정,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 이상없을 시 사역

※ 면접 응시인원이 선발인원 이하 일 경우 2차 시험 생략 가능

6. 기타사항

○ 취약계층, 중위소득 초과여부 등 일모아시스템활용 확인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폰 등 연락가능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공원녹지담당(☎055-940-3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 응시원서 :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자필**로 작성 제출
 - 성 명 : 정자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
 -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도로명 주소)를 기재
 - 사 진 :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부착
 - 학 력 :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
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
 - 가족사항 : 주민등록상 가족사항 작성
 - 자격면허 및 경력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작성후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17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채용등급	채용분야
	. . (세)	기간제근로자	산 립 과 (조경관리단)

2017. . .

작성자 : (서명·인)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또한,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기술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참고자료

☞ 신청자의 취약계층 해당여부는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7년)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미포함
			32,604	8,352	32,894	포함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미포함
			55,387	32,084	55,427	포함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미포함
			71,719	59,796	71,963	포함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미포함
			87,957	88,495	88,560	포함
	5인	3,176,000	97,367	104,084	98,270	미포함
			103,745	110,902	104,707	포함
	6인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미포함
			120,326	134,629	121,713	포함
7인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미포함	
		136,121	154,732	137,860	포함	
8인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미포함	
		152,422	172,089	154,517	포함	
9인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미포함	
		170,939	191,917	173,766	포함	
10인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미포함	
		185,613	206,602	188,737	포함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 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만20세~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 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여성가장	<table border="1" data-bbox="448 481 1423 1249"> <thead> <tr> <th data-bbox="448 481 576 539">구 분</th> <th colspan="2" data-bbox="576 481 1423 539">첨 부 서 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48 539 576 629">배우자 無</td> <td colspan="2" data-bbox="576 539 1423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td> </tr> <tr> <td data-bbox="448 629 576 1249" rowspan="9">배우자 有</td> <td data-bbox="576 629 863 687">가출·행방불명</td> <td data-bbox="863 629 1423 687">실종신고서</td> </tr> <tr> <td data-bbox="576 687 863 777">장애</td> <td data-bbox="863 687 1423 777">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치급통지서 중 1</td> </tr> <tr> <td data-bbox="576 777 863 835">질병</td> <td data-bbox="863 777 1423 835">의사의 진단서</td> </tr> <tr> <td data-bbox="576 835 863 893">군복무</td> <td data-bbox="863 835 1423 893">복무확인서</td> </tr> <tr> <td data-bbox="576 893 863 952">학교 재학</td> <td data-bbox="863 893 1423 952">재학증명서</td> </tr> <tr> <td data-bbox="576 952 863 1010">교도소 입소</td> <td data-bbox="863 952 1423 1010">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 </tr> <tr> <td data-bbox="576 1010 863 1128">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td> <td data-bbox="863 1010 1423 1128">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td> </tr> <tr> <td data-bbox="576 1128 863 1187">이혼소송 제기</td> <td data-bbox="863 1128 1423 1187">이혼소송확인서</td> </tr> <tr> <td data-bbox="576 1187 863 1249">기타 가족 생계 부양</td> <td data-bbox="863 1187 1423 1249">통·반장의 확인서(검토)</td> </tr> </tbody> </table>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치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치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만 55세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시작(예정)일 시점 만 55세 이상인 자 																									